

1. 개정이유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기후변화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보와 특보를 세분화하며, 예보 및 특보를 생산하는 예보관의 자격, 업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9225호, 2023. 2. 14. 공포, 2024. 2. 15. 시행)됨에 따라 예보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근무경력 및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류를 정하고 예보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의 이수 주기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상현상의 증명과 같이 기상정보의 제공에 대하여도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제도를 도입하여 기상정보를 이용하려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 등 대용량 기상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청장은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슈퍼컴퓨터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예보관의 자격을 정함(안 제2조의3 신설)

- 1) 예보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근무경력을 기상청에서 예보 관련 교대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기상청 또는 기상청 외의 기관에서 기상 예보 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로 정함.

- 2) 예보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류를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또는 기상감정사 중 어느 하나로 정함.
- 다. 국가기상센터에서 기상현상의 실황을 감시하거나 예보 및 특보를 생산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계 기관의 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를 합동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4 신설).
- 라.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해피해현황, 지역특성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장비·인력 등을 지원함(안 제4조의3 신설).
- 마. 예보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내용을 정하고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3 신설, 안 제15조).
- 바. 기상정보 제공 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그 대상을 정함(안 제17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을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① 기상청장은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수치예보모델의 개발 및 개선
2. 관측자료의 품질검사 및 수치예보모델 입력
3. 수치예보자료(수치예보모델을 이용하여 대기의 상태와 운동을 계산하여 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생산
4. 수치예보자료의 분석, 재가공 및 가시화
5. 수치예보자료의 검증 및 평가
6. 수치예보기술의 연구 및 확산
7. 국내외 수치예보기술 협력 및 지원

8. 슈퍼컴퓨터의 구축 및 운영

9. 그 밖에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상청장은 수치예보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안정적인 개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2조의3(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①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상청에서 1년 이상 예보 관련 교대근무를 한 사람

2. 기상청 또는 기상청 외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기상 예보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기상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기상감정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③ 법 제17조의3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적인 사후 분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보 및 특보가 기상청

장이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기상현상 중 기상청장이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분석을 말한다.

1. 「기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단기예보

2.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3.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

④ 예보관은 제3항에 따른 사후분석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의 사후분석에 관한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사후분석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

제2조의4(국가기상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상센터 및 지역기상센터(이하 “기상센터”라 한다)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예보관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기상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상현상의 실황 감시 및 분석

2. 예보 및 특보의 생산·발표 및 전파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1호의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기상 실황 분석 및 정보 제공

4. 주변 국가의 기상현상 실황 및 그 변화의 감시와 국내 영향 가능성 분석

③ 기상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를 기상센터 내에 합동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선 또는 무선의 통신은 다음 각 호를 이용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1. 세계기상기구(WMO) 세계기상통신망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고정통신망
3. 무선 팩스 기상방송
4. 해양기상 위성방송
5. 인터넷 홈페이지
6.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7.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서비스 또는 민간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길안내 영상장치(내비게이션) 등을 말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법 제19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통신 장비”란 해양기상 위성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제4조의3(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기

상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연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해피해현황, 지역특성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지역별 기상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해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대응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장비·인력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는 방재기상업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방재기상업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그 밖에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

제14조의3(예보관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① 기상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1. 예보관 기본교육: 기상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보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을 포함한 교육

2. 예보관 전문교육: 예보관을 대상으로 예보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포함한 교육

② 예보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보관 교육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기상재해”를 “법 제35조제4항 본문 및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각각 “법 제35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후업무 전문교육: 법 제35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제1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기관으로”를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관현황(교관”을 “강사현황(강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5조의3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교육기관의 대표자
2. 교육기관의 명칭
3. 교육기관의 주소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기상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의3을 제16조의4로 하고,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기상과학관의 설립·운영 등) ① 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기상과학관 설립·운영 사전협의 신청서 및 사전평가 결과서는 각각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 ② 기상청장은 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된 자료 이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기상과학관 설립·운영 사전협의 결과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7조의2제1항 중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를 “말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상청장(「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을 “기상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7조의2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1. 제17조제5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이 경우 제1호에 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3. 제17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자. 이 경우 해당 연구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상정보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창업기업
5.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속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속하지 않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7.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8.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

제17조의3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8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별표 16 제26호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8호”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②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1호다목1)의 출항통제선박란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상 예보구역”을 “제9조제4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보의 대상구역”으로 하고, 같은 란 가) 중 “기상특보·예보”를 “해양기상특보·예보”로 하며, 같은 목 풍랑·폭풍해일경보, 태풍주의보·경보의 출항통제선박의 통

제절차란 중 “기상특보”를 “해양기상특보 또는 특보”로 하고, 같은 목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보 또는 해양기상특보의 발표 기준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
2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다.

별표 10 제2호다목의 풍랑·폭풍해일주의보부터 제한시까지의 출항통
제선박의 통제절차란 중 “기상특보”를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③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로, “예보·특보”를 “예보·특보·태풍예보”로 한다.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제16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나.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4차 위반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35조의4 제2항제1호	지정취소			
나. 1년에 3회 이상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35조의4 제2항제1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35조의4 제2항제3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35조의4 제2항제4호	시정명령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귀하

첨부서류	교육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	-----------



기상업무 교육기관 변경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기상법」 제35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기상업무 교육기관 변경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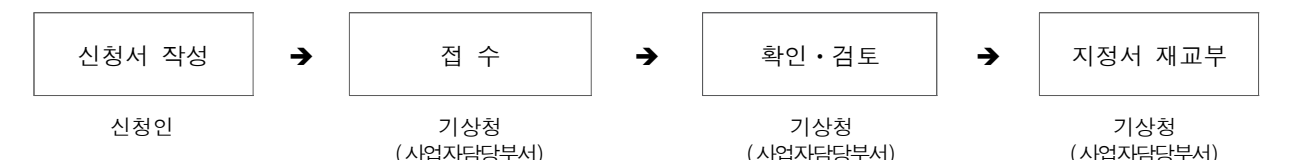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

○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주 소:

○ 교 육 과 정 명:

○ 지 정 조 건: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상업무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 상 기 후 인 재 개 발 원 장 직인

○○ 기상과학관 설립·운영 사전협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이내
사업명					
설립 예정	③ 과학관 명칭				
	④ 과학관 구분	[] 종합과학관(분야:) [] 전문과학관(분야:)			
	⑤ 위치				
	⑥ 규모	부지 m²(평) 건평 m²(평) (지하 층, 지상 층)			
	⑦ 소장자료	점			
	⑧ 소요예산	천원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결과					

기상법 제35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기상과학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사전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신고인)

기상청장 귀하

첨부서류	기상과학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결과서 1부 기상과학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자료 1부 부동산 사용권 증명서 1부, 기상과학관 위치도 1부, 계략 설계도서 1부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기관명		주관부서		
구 분	직 급	이 름	전화번호	이메일
작성자				

○○ 기상과학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결과서

기관명(신청기관)		검토부서	
구 분	직 급	이 름	전화번호
작 성 자			

설립 예정	③ 과학관 명칭	
	④ 과학관 구분	[] 종합과학관(분야:) [] 전문과학관(분야:)
	⑤ 위치	
	⑥ 규모	부지 m ² (평) 건평 m ² (평) (지하 층, 지상 층)
	⑦ 소장자료	점
	⑧ 소요예산	천원

구 분		검토내용
경쟁력· 수요 관련	경쟁력	(기 운영되고 있는 과학관·박물관 등 유사시설과의 차별성 검토)
	수요	(유료·무료 관람객 예상 수요 등 운영에 있어서의 지속가능성 및 필요성 검토)
예산·운영 관련	예산	(인건비·전시프로그램 운영비·공공요금 등 예상지출액 및 재원조달방안을 고려한 적정성 검토)
	운영	(전시·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계획 및 인력 구성계획을 고려한 적정성 검토)
과학관 등록 요건		과학관 구분 시설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충족 여부		
검토결과 종합		(기상과학관 설립·운영의 타당성 여부 종합 검토 결과)

○○ 기상과학관 설립·운영 사전협의 결과서

사 업 명			
검토부서		검토일자	
작 성 자		전화번호	

구 분		검토내용			
경쟁력· 수요 관련	경쟁력	<i>(기 운영되고 있는 과학관·박물관 등 유사시설과의 차별성 검토)</i>			
	수요	<i>(유료·무료 관람객 예상 수요 등 운영에 있어서의 지속가능성 및 필요성 검토)</i>			
예산·운영 관련	예산	<i>(인건·바·전시프로그램 운영·바·공공요금 등 예상지출액 및 재원조달방안을 고려한 적정성 검토)</i>			
	운영	<i>(전시·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계획 및 인력 구성계획을 고려한 적정성 검토)</i>			
과학관 등록 요건 충족 여부		과학관 구분	시설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검토결과 종합		<i>(기상과학관 설립·운영의 타당성 여부 종합 검토 결과)</i>			

기상현상증명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성명(대표자)	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 주소)		
	주소			
신청사항	기상현상의 종류		기간	
	기상요소			
	지점(지역)		지점정보 포함[]	
	용도 및 제출처		발급부수 부	
수수료 감면·면제	해당여부 ☐ 감 면 ☐ 면 제 ☐ 해당없음			
	감면(면제)사유 ※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상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의 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위탁받은 자() 귀하

첨부서류	☐ 없음 ☐ 감면(면제) 대상 증명서류 1통	수수료 아래 참조
수수료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비고: 수수료 금액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작성방법		
1. 기상현상의 종류란에는 증명을 받으려는 기상자료를 적습니다.(예: 종관기상관측, 방재기상관측, 항공기상관측, 기상특보 등) 2. 기상요소란에는 증명을 받으려는 기상요소의 종류를 적습니다.(예: 일별강수량, 일별평균기온, 일기상통계표, 호우주의보 등) 3. 지점(지역)란에는 증명을 받으려는 지점 또는 지역명을 적습니다.(예: 서울, 강릉, 충주, 서귀포 등)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발급
신청인		기상청 또는 위탁받은 자(기상현상증명 담당부서)

기상정보제공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성명(대표자)	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 주소)	
	주소		
신청사항	기상정보의 종류		기간
	기상요소		
	지점(지역)		
	용도	자료종류 및 발급부수	
수수료 감면·면제	해당여부 ☐ 감 면 ☐ 면 제 ☐ 해당없음		
	감면(면제) 사유 ※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대행하는 자() 귀하

첨부서류	☐ 없음 ☐ 감면(면제) 대상 증명서류 1통	수수료 아래 참조						
수수료 납부 방법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비고: 수수료 금액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기상정보 제공
신청인		기상청 또는 대행하는 자 (기상정보제공 담당부서)						

기상현상증명서

QR코드

증명사항	기상현상의 종류	기간
	기상요소	
	지점(지역)	
	기상현상의 내용	

「기상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상현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장
위탁받은 자()



발급 시각:

- ◆ 본 증명서는 기상청 기상현상증명발급시스템 홈페이지나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위·변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위 자료는 관측 자료의 오류 보완 등 사후 품질관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조의2(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① 기상청장은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기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해상특보의 대상구역 중 선박의 안전 운항 및 해양 활동을 위하여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해양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u>②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 중 기상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u> <u>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의 공항</u> <u>2.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육상비행장</u> <u>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상청</u>	<u><삭 제></u>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관측망 구축 사업계획서

2. 관측망을 구성하는 기상측기
의 내역서 및 구성도

④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에 대
한 관측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 및 관측자료의 수집
·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
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별
제1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3. (생략)

<신설>

제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
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12조제2항-----
-----.

1. ~ 3.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① 기상청장은 법 제1
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
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
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해야 한다.

1. 수치예보모델의 개발 및 개
선

2. 관측자료의 품질검사 및 수
치예보모델 입력

3. 수치예보자료(수치예보모델

<신 설>

- 을 이용하여 대기의 상태와
운동을 계산하여 미래의 기상
현상을 예측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생산
4. 수치예보자료의 분석, 재가공
및 가시화
5. 수치예보자료의 검증 및 평
가
6. 수치예보기술의 연구 및 확
산
7. 국내외 수치예보기술 협력
및 지원
8. 슈퍼컴퓨터의 구축 및 운영
9. 그 밖에 예보 및 특보의 생산
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기상청장은 수치예보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
성하고 안정적인 개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치예보시스템의 개
발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 제2조의3(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 ①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상청에서 1년 이상 예보 관련 교대근무를 한 사람

2. 기상청 또는 기상청 외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기상 예보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기상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기상감정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③ 법 제17조의3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적인 사후분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보 및 특보가 기상청장이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기상현상 중 기상청장이

<신 설>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분석을 말한다.

1. 「기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단기예보

2.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3.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

④ 예보관은 제3항에 따른 사후분석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의 사후분석에 관한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사후분석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

제2조의4(국가기상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상센터 및 지역기상센터(이하 “기상센터”라 한다)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예보관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4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통신에 의한 발표대상지역 등) ①	② 기상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상현상의 실황 감시 및 분석 2. 예보 및 특보의 생산·발표 및 전파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1호의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기상실황 분석 및 정보 제공 4. 주변 국가의 기상현상 실황 및 그 변화의 감시와 국내 영향 가능성 분석 ③ 기상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를 기상센터 내에 합동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4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통신에 의한 발표대상지역 등) ①
--	--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유선 또는 무선의 통신은 다음 각 호를 이용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1. 세계기상기구(WMO) 세계기상통신망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고정통신망

3. 무선 팩스 기상방송

4. 해양기상 위성방송

5. 인터넷 홈페이지

6.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7.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서비스 또는 민간서비스[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길안내 영상장치(내비게이션) 등을 말한다]

제4조의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법 제19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통신 장비”란 해양기상 위성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제4조의3(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연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해피해현황, 지역특성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지역별 기상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해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대응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장비·인력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는 방재기상업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방재기상업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의 수집·분석 등) ① ~ ④ (생략)

⑤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조사 및 기후변화 추세 예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 3. (생략)

제7조의3(협회의 기능) ① (생략)

<신설>

<신설>

제5조(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의 수집·분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의3(협회의 기능)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4조의2(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그 밖에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

제14조의3(예보관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① 기상청장은 법 제35

제15조(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의 종류 및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1. 예보관 기본교육: 기상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보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을 포함한 교육

2. 예보관 전문교육: 예보관을 대상으로 예보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포함한 교육

② 예보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보관 교육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5조(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5조제4항 본문 및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 -----
-----.

1. 방재기상업무 특화교육: 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 항공, 산림, 교통 등 분야별로 특화된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방재기상업무 일반교육: 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신 설>

②·③ (생략)

제16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로서 별표 1에 따른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기관·단체를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1. ----- 법 제35조제3항제1호 -----

2. ----- 법 제35조제3항제1호 -----

3. 기후업무 전문교육: 법 제35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삭제>

른 학교 중 기상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학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3.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②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상 업무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교관현황(교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
 3. ~ 6. (생략)
- ③ (생략)

②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

-- 제출해야 ----.

1. (현행과 같음)
 2. 강사현황(강사-----

 3. ~ 6.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제16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명령) (생 략)

④ 법 제35조의3제4항에서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교육기관의 대표자
2. 교육기관의 명칭
3. 교육기관의 주소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변경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
출해야 한다.

1.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기상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제
출받은 신청서가 교육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변
경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
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16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u><신 설></u>	같음) ②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u><신 설></u> <u>제16조의3 (생 략)</u> 제17조의2(기상정보의 제공) ①	제16조의3(기상과학관의 설립·운영 등) ① 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기상과학관 설립·운영 사전협의 신청서 및 사전평가 결과서는 각각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기상청장은 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된 자료 이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기상과학관 설립·운영 사전협의 결과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다. <u>제16조의4 (현행 제16조의3과 같음)</u> 제17조의2(기상정보의 제공) ① -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기상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기상정보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기상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상정보가 수집되면 지체 없이 기상정보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단서 신설〉

<신 설>

----- 말한

다. 이하 이 항부터 제2항까지

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

② 기상청장-----

③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신청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
다.

1. 제17조제5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신 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이 경우 제1호에 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3. 제17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자. 이 경우 해당 연구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상정보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창업기업

5.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속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

